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2016. 2. 11.

전부개정 2021. 11. 12.

제 1 장 총칙

제 1 조(설치근거 및 명칭)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정관 제37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명칭은 회원종목단체 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원종목단체 평가계획 및 평가업무지침의 심의
2. 회원종목단체 평가의 실시
3. 회원종목단체 평가결과의 심의
4. 회원종목단체 평가결과에 따른 승강여부의 타당성 심의
5.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회원종목단체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유관 공공기관 인사, 경기인, 회계사·법률가 등 평가 및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7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 9 조(평가단) ① 위원회는 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정하며,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평가업무지침에 따른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업무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3. 그 밖에 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조 요구) 평가대상단체 및 체육회 각 부서의 장은 평가와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 회의의 참석 등 위원회 및 평가단으로부터 협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

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고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체육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평 가

제15조(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회원종목단체(정회원·준회원)를 기본으로 하되, 인정단체 등의 평가대상을 추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평가의 실시) ① 체육회는 매년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주기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체육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는 평가 대상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평가대상연도의 전년도 11월까지 평가 실시계획, 평가체계,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업무지침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업무지침에 기초하여 작성한 평가편람을 매 평가대상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대상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 및 제16조제2항에 의해 평가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에 대해 구체적 검토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단장은 통보된 안건의 검토·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워크숍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평가의 검증) ① 평가는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검증을 위해 면담 및 현장실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단체의 보고서 제출 시 단체장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실적 제출의 거짓 및 오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재확인토록 한다.

③ 평가대상단체가 제출한 자료 중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지표는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평가의 결과) 위원회는 평가단 및 전문기관 등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와 평가실시 해당 연도에 조치된 감사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확정) ① 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평가등급의 부여는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며, 평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우우수
2. 우수
3. 양호
4. 보통
5. 미흡

②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평가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평가결과를 취소하고 미흡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연도 최저 기준금액으로 책정하며 그 차액은 환수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이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활용된다.

1.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조직관리 및 정책 개선 등
2. 미흡을 제외한 상위 4개 평가등급을 받은 단체에게 등급별로 차등을 둔 경기력향상지원비 및 운영비 등의 항목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회장이 별도로 정함
3. 미흡단체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제공

4. 3년 연속 미흡단체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지원비 및 운영비 등을 삭감 할 수 있으며, 삭감 금액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회장이 별도로 정함

②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의 평가업무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